## 학과(전공) 정원조정에 관한 규정

제정	:	2014.	11.	6.
개정	:	2018.	3.	1.
개정	:	2019.	6.	18.
개정	:	2020.	3.	13.
개정	:	2021.	12.	1.
개정	:	2024.	3.	1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과(전공) 학생 정원조정을 위한 학과(전공)평가의 기준 및 절치를 정하고 이를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평가대상) 평가대상 학과(전공)는 본교의 모든 학과(전공)를 대상으로 한다. 단, 신설학과 (전공)는 편제완성 후 2년까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. <개정 : 2020.3.13.>

제3조(평가방법) ① 평가는 매학년도 1학기 초(4월)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<개정: 2020.3.13.>

② 학과(전공)별 평가점수는 별지1에 기술한 방법에 따라 산출하다. <개정 : 2020.3.13.>

**제4조(정원조정대상 선정)** 학과(전공) 정원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. <개정 : 2020.3.13.>

- 1. 제3조에 의한 평가 결과 2년 연속 또는 4회 이상 하위 30%에 속하는 경우
- 2. 당해 연도 입시충원에서 미달이 발생했거나 익년도 입시충원에서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
- 3.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학특성화 등 본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학과(전공)의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5조(정원조정 절차) ① 학과(전공) 정원조정 및 신설, 통·폐합은 기획처에서 관장한다.

- ② 학과(전공) 정원조정 및 신설, 통·폐합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학과(전공) 정원조정 및 신설, 통·폐합 대상 선정 및 계획(안) 수립
  - 2. 대상 학과(전공) 의견 수렴
  - 3. 대학발전위원회 심의
  - 4. 대학평의원회 심의
  - 5. 이사회 승인으로 최종 확정
  - 6. 결과 통보 및 관련 부서 후속 조치 시행

제6조(학과 및 전공 최소 정원) 학과(전공)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입학정원은 20명을 원칙으로 하다.

- 제7조(학과 폐지 통합 등에 따른 교직원 처리) ① 학과 폐지 및 통합 등으로 교직원이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정관 제5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당해 교직원을 면직처리 한다. <개정 : 2020.3.13.>
 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리 대상 교직원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근무실적, 직무수행능력, 기타 실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다. <개정 : 2020.3.13.>
  - ③ 제1항에 따라 교원을 처리함에 있어 본교 내 다른 학과의 전공 강의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환배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: 2020.3.13.>
  - ④ 제3항의 규정의 경우 전환배치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당해인의 근무실적, 직무수행능력 및 교원업적평가 성적 등이 저조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전환배치의 효력을 상실한다.
- 제8조(전공전환 신청) 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교원이 당해인의 전공을 전환하여 다른 학과의 신설을 원하는 경우 총장에게 전공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  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공 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  - 1. 신설학과 설치의 취지 및 전망
    - 2. 신설학과의 운영방안
    - 3. 신설학과의 교육계획
  - 4. 전공전환 내용 및 방법
  - 5. 기타 전공전환 입증에 필요한 서류
  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공전환을 신청한 자가 그 내용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직된다.
- 제9조(재학생에 대한 처리) ① 폐지가 결정된 모집단위의 학생은 입학 시의 모집단위 소속을 그대로 유지하며, 그 기간은 학칙의 부칙에서 정하는 기간을 따른다.
  - ② 폐지가 결정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로의 전과를 허용하며, 세부사항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학칙에 따라 본래 전과가 허용되지 않거나,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.
  - ③ 폐지가 결정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인접대학 동일전공으로의 전학을 희망할 경우, 인접대학 과의 협약을 통해 전학을 추진한다. 다만 협약이 체결된 대학에서 허용할 경우 전학이 가능하다.

④ 모집단위가 통합되었을 경우, 통합되기 이전 모집단위 소속의 학생은 통합된 모집단위 소속의 학생이 된다.

제10조(시행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발전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[별지 1]

## 1. 평가지표별 정의

구분	평가지표명	배점	평가지표별 점수 산출방법	비고	
입하	입시경쟁률	10	최근 3개년도 입학경쟁률 표준점수 기중평균		
	신입생충원율	30	최근 3개년도 신입생충원율 표준점수 기중평균	기중평균은 당해연도 60%, 전년도 30%, 전전년도 10%로 산출	
재학	1차재학생충원율	20	최근 3개년도 1차재학생충원율 표준점수 기중평균		
	2차재학생충원율	10	최근 3개년도 2차재학생충원율 표준점수 기중평균		
취업	취업률	30	최근 3개년도 취업률 표준점수 가중평균		
합계 1		100			

\*\* 학과 신설 및 개편 등을 통해 2개년 값만 있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은 당해연도 70%, 전년도 30%로 적용하고, 1개년 값만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00%를 적용함

## 2. 평가지표별 표준점수 산출방법

평가지표명	평가지표별 원점수 산출	평가지표별 표준점수 산출	기준일
입학경쟁률	정원내총지원자수/정원내모집인원	10*[(학과입학경쟁률-대학입학경쟁 률)/입학경쟁률표준편차]+50	당해연도 3/1일
신입생충원율	(정원내입학자수/정원내모집인 원)×100	10*[(학과신입생충원율-대학신입생 충원률)/신입생충원율표준편차]+50	당해연도 3/1일
1차재학생충원율	(정원내재학생수/편제정원)×100	10*[(학과재학생충원율-대학재학생 충원율)/재학생충원율표준편차]+50	당해연도 4/1일
2차재학생충원율	(정원내재학생수/편제정원)×100	10*[(학과재학생충원율-대학재학생 충원율)/재학생충원율표준편차]+50	직전연도 10/1일
취업률 지수	(취업자수/취업대상자수)×100	10*[(학과취업률-대학취업률)/취업률 표준편차]+50	전전연도 12/31일

※ 학과 신설 및 개편 등을 통해 값이 없는 평가지표는 50점을 부여함